

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 및 읍면장(이하 "시·읍면장"이라 한다)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을 참작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.
"별표2", "별지제1호서식", "별지제3호서식"을 각각 "별지"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<u>제4조(부과기준 및 면제) ①시장 및 읍 면 (이하 "시·읍면장"이라한다)은 과태 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, 신고의무자의 학력, 생활정도,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.</u></p> <p>②(생략)</p>	<p><u>제4조(부과기준 및 면제) ①시장 및 읍 면장(이하 "시·읍면장"이라한다)은 과 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을 참작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 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.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